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4.

발의의원 : 신달호 의원,

김보경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달성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최 신청 기한(30일) 변경(안 제4조제1항)

나. 신청 통보 기한(토요일·공휴일 제외한 5일 이내) 변경(안 제4조제2항)

다. 수당 등 지급근거 구체화(안 제9조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56조”를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69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5일”을 “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(토요일·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실비지급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토론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 중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”를 “토론회”로, “제14조제3호에 따른 실비를”을 “제14조에 준하여 수당 등을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단순 참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토론회 등”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, 세미나, 발표회,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방식을 말하며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.</p> <p>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69조----- -----.</p> <p>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0일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이내(토요일·「관공서의 공휴일</p>

서면으로 알려야 하며,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9조(실비지급) 토론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 중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, 토론자,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제3호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)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당 등) 토론회 -----

제14조에 준하여 수당 등을 -----. 다만, 단순 참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(조례)」(2022.10.28 전부개정시행) 제14조(수당 등)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1. 참석수당: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, 관련 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. 이 경우 재난상황, 시급한 안전 처리의 필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(화상회의 등)를 포함한다.
 2. 심사수당
 - 가.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전 처리.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 - 나.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면·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
 3. 실비: 교통비, 급량비, 숙박비, 여비 등